국가대표 선발 규정

2016. 04. 07. 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가대표선수 및 국가대표지도자의 선발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'국가대표'란 '국가대표선수' 및 '국가대표지도자'를 말한다.

②'국가대표선수'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2조 제4의 2에 의거 대한장애인당구협회(이하 '협회'라 칭한다.) 가 국제대회(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.)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·확정한 자를 말한다.

③'국가대표지도자'란 국가대표 훈련기간 및 국제대회 기간 동안 국가대표선수를 지도·괸리하기 위해 협회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(국가대표 선발 및 보고) ①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 및 지도자는 본 협회에서 선발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함으로써 국가대표의 자격을 갖는다.

②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본 협회에 의하여 종목별 국제대회에 파견하는 선수 및 지도자는 종목별 선발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종목별 국가대표로서 자격을 갖는다.

제4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.

- 1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3. 협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
- 4.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 만료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,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
- 5. 성추행,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,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

영구 결격

- 6.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,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7. 승부조작 기타 부정행위(부정선발, 담합, 금품수수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와 강간,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
- 8.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
- 9. 본 협회, 또는 민간단체(시도장애인체육회 등)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,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10. 본 협회, 또는 민간단체(시도장애인체육회 등)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 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11. 부정부패 또는 비리 등의 행위로 퇴사하거나 징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
- 12.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(지도자에 한함)
- 13. 본 협회(시도지부 포함)의 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,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제5조(성실의무 및 품위유지)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임을 명심하고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야 하며,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 전문체육위원회

제6조(전문체육위원회 설치) 대한장애인당구협회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체육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- 1.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 선수 및 지도자 선발에 관한 사항
- 2. 국가대표 강화훈련의 실시, 지도, 감독,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
- 3. 국제경기대회 국가대표 참가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과 관련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1. 위원장 1인
- 2. 부위원장 1인
- 3. 위원 7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- ② 위원회의 위원들 중에는 장애인선수출신 1인, 여성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 장애인

선수출신이면서 동시에 여성일 경우에는 장애인선수출신 1인 및 여성 1인 포함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.

-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- ④선수 및 지도자의 선발기준, 확정 관련 안건은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 할 수 없다. 다만, 선수의 부상, 경기력 부진 등에 따른 일부 선수 교체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(5)장애유형별 선수선발 시에는 해당 장애유형분과위원회를 포함하여 구성·운영한다.
- 제8조(위원의 위촉) (1)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다.
 - ②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- 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- 제10조(위원회 구성 시 준수사항) ①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 - ②회장과 친족인자(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)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 - ③동일 대학 출신자 또는 동일 대학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
 - ④위원은 해당 종목 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다.

제3장 선 수

- 제11조(국가대표선수 선발) ①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는 협회가 사전에 정한 선발기준 및 일정에 따라 선발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고, 종합대회 국가대표선수 선발은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훈련에 참가 할 수 있다.
 - ②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자비 출전 선수일 경우 협회의 책임 하에 관리 감독한다.
- 제12조(선발시기) ①국제대회 파견을 위한 국가대표선수의 선발 시기는 이를 사전에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고, 해당 국제기구가 정한 일정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.
 - ②국가대표 상시훈련은 차기년도 국가대표선수에 대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선발을 완료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 시 이를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선발기준 및 절차) ①국가대표선수 선발은 최소 연 1회 이상 공개 선발전을 통한 정기선 발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부상, 경기력 부진 등 결원에 따른 교체의 경우, 단체종목은 감독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선발하고, 개인종목은 선발전 최종성적 기준으로 상위성적 선수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한다.
 - ③국가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대표 선발일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

포함된 공지내용을 확정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관련 단체에 통지한다.

- 1. 국가대표 선수 선발개요
- 2. 국가대표 선수 선발기준, 방법 및 근거
- 3. 해당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대회 참가 기준 및 요강
- 4. 기타 국가대표 선수 선발 관련자료 등
- ④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소속팀으로부터의 차출 시 대표선수의 원 소속팀(시.도지부) 와 반 드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임무) 국가대표선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- 1.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에 따른다
- 2. 지도자의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거나 훈련장 무단이탈 금지
- 3. 기타 경기력향상과 관련된 제반 사항

제4장 지 도 자

제15조(국가대표지도자 선발) ①국가대표지도자(감독, 코치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하다.

- 1. 감독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(코치의 경우 5년이상)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(코치의 경우 2년 이상)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.
- 2. 당구 종목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장애인올림픽대회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. 단,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,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.
- 3. 협회에서 발급한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종목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
- ②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 장애인 특수종목의 경우, 제15조 ①항 2호, 3호에 의거 회장의 추천에 의거 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한다.
- ③감독, 코치 이외에 보조지도자를 둘 수 있다.
- ④장애인올림픽대회(농아인올림픽 포함),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(농아인아시아경기대회 포함), 유형별종합대회 등 종합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지도자(감독에 한함)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 되, 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. 단 장애인올림픽 대회의 경우 대회 대비 훈련개시 최소 3개월 전에 국가대표지도자(감독에 한함)를 선발하여 야 한다.

- ⑤국가대표지도자(감독, 코치 및 보조지도자를 모두 포함)는 최종 선발 당시까지 성폭력관련 범죄경력(징계경력을 포함)이 없는 자이어야 하고 최종 선발된 이후 장애인체육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년 1회,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후 7일이내 이수확인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다.
- 제16조(국가대표지도자 선발방법 및 시기) ①국가대표지도자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회 의결 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.
 - ②선발과정 및 결과는 공개하여야 하며, 회의록 등 선발근거 자료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 - ③국가대표지도자의 임용 및 재임용 시, 해당 지도자의 평가보고서를 작성, 평가하고,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- ④국가대표지도자 선발은 협회 국가대표선수 선발에 해당 지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선수 선발 실시 전에 확정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임기 및 역할) ①국가대표지도자의 신분 보장과 안정적인 선수 관리를 위해 최소 1년 이상임기(계약기간)를 보장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.
 - ②국가대표지도자인 감독은 코치, 보조지도자 및 국가대표선수 선발 시 위원회에 서면 또는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감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되, 감독의 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한다.

제18조(임무) 국가대표지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- 1. 국가대표선수의 훈련 및 관리
- 2.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
- 3. 일일 훈련일지 작성
- 4. 국가대표 훈련대상 선수 선발 참여
- 5. 경기력 부진선수 교체 건의
- 6. 국가대표 훈련참가자의 해외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파견 시 인솔
- 7. 각종 국제대회 참가보고서 작성 및 분석결과 보고
- 8. 선수 신상파악, 사고발생 시 즉시보고
- 9. 훈련원 지시사항 이행
- 10. 기타 경기력향상과 관련되는 사항

제5장 징 계

제19조(징계) ①협회는 국가대표를 구성함에 있어 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

국가대표에 대하여 징계 할 수 있다.

- ②징계는 법제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하며, 본 협회에 대한 징계는 장애인체육회가 한다.
- ③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- 1. 경징계: 경고, 견책, 감봉
- 2. 중징계: 출전정지, 자격정지, 해임, 제명

제6장 보 칙

제20조(훈련제외) 국가대표선수 및 국가대표지도자의 선발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국가대표 강화훈련에서 제외한다.

제21조(국가대표 선발규정의 개정시기) ①본 규정은 제·개정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에 개정할 수 있으며, 협회에서 이사회 의결, 확정 후 개정 내용을 장애인체육회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②다만, 규정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1년 이내 제·개정이 필요할 경우, 협회는 반드시 사전에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특하여야 한다.

제22조(자료의 보관) 협회는 국가대표 선발기준, 과정,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, 이의제기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근거(선발결과 기록지, 분석지, 및 회의록 등) 관련 자료를 최소 5년 간 보관(관리)하여야 한다.

부 칙 (2016. 04. 0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,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